

김포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제3753호
----------	--------

제출년월일 2026. 3. 6.
제출자 김포시장

1. 제안이유

- 「지역보건법」 제14조에 따라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 습관형성을 지원하고, 지역특화형 통합건강증진사업 발굴 및 수행을 위한 김포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건강생활지원센터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안 제2조)
- 나.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 (안 제3조 ~ 안 제5조)
- 다. 지역건강협의체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안 제12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 법령 및 현행 자치법규 : 붙임
- 나. 예산조치 : 없음
- 다. 그 밖의 사항
 - 1)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26. 1. 23. ~ 2. 12.(20일)
 -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 2) 부서협의
 - 가) 규제사전심사 : 해당 없음
 - 나) 성별영향분석 : 원안 동의
 - 다) 부패영향평가 : 원안 동의
 - 3) 중앙 및 도 관련부서
 - 가) 중앙부처 :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 나) 경기도 : 보건의료정책과

김포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14조에 따라 김포시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김포시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강생활지원센터”란 지역사회와 주민 참여와 지역자원 협력을 통해 주민들이 건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소생활권 중심의 지역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
2. “지역건강협의체”란 보건소 건강생활지원센터, 주민건강조직, 지역사회의 공공 및 민간 부문 자원 등으로 구성되어 지역사회의 건강문제를 함께 협의하고 조정하는 기구를 말한다.
3. “주민건강조직”이란 건강생활지원센터 건강증진사업의 중심이 되며, 스스로 지역 건강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자치적인 모임을 말한다.

제3조(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 등)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김포시에 건강생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며, 그 명칭과 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제4조(업무 및 기능) 센터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주민의 건강생활실천 등 건강증진과 질환 사전예방 및 관리
2. 지역사회의 건강문제 파악 및 기초자료 구축

3. 지역주민이 갖고 있는 건강생활 수준 등 건강지표 향상을 위한 맞춤형 건강프로그램 운영 등 지원
4. 지역주민참여와 지역자원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지역특화사업 발굴 및 수행
5. 지역주민과 지역사회의 건강수준 향상 등 역량 강화를 위한 건강지도자 교육과 보건교육 지원
6. 지역건강협의체를 중심으로 건강증진사업 기획, 운영, 평가 등 지원
7. 그 밖에 건강격차 해소와 건강환경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조직 및 인력) ① 센터에는 건강생활지원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

1명을 두되, 보건 등 직렬의 공무원 또는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보건의료인을 건강생활지원센터 센터장으로 임용한다.

② 센터장은 보건소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센터의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센터에 두어야 하는 전문인력의 면허 또는 자격의 종류에 따른 최소 배치 기준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를 따른다.

제6조(지역건강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① 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결정하기 위하여 센터에 지역건강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센터 운영계획 수립과 평가에 관한 사항
2. 센터 사업운영 및 활동 점검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 자원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지역주민 건강동아리 발굴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센터의 협력 사업에 필요한 사항

제7조(협의체의 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주민건강조직의 구성원과 협력기관의 관계자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센터 업무 담당 부서장

2. 위촉직

가. 지역건강활동에 관심과 의지가 있는 주민건강조직의 구성원

나. 지역자원 협력기관의 대표 또는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다. 그 밖에 센터 사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협의체 운영 담당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

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등) ① 협의체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④ 협의체는 회의가 개최될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존해야 한다.

제11조(수당 등) 협의체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소		보건행정과
입 안 자	실·과·소장 성 명	보건행정과장 박 임 순
	담 당 성 명	보건행정팀장 김 지 영
	담 당 자 전 화	보건행정팀장 김 지 영(☎4002)

[별표]

건강생활지원센터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제3조 관련)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고촌읍건강생활지원센터	김포시 고촌읍 장차로 14	고촌읍 일원

지역보건법

제14조(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소의 업무 중에서 특별히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는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1조(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 법 제14조에 따른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읍면동(보건소가 설치된 읍면동은 제외한다)마다 1개씩 설치할 수 있다.

제15조(건강생활지원센터장) ① 건강생활지원센터에 건강생활지원센터장 1명을 두되, 보건등 직렬의 공무원 또는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보건의료인을 건강생활지원센터장으로 임용한다.

② 건강생활지원센터장은 보건소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6조(전문인력의 배치기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지역보건의료기관에 두어야 하는 전문인력(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의 면허 또는 자격의 종류에 따른 최소 배치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전문인력의 배치) ① 영 제16조에 따른 전문인력의 면허 또는 자격의 종류에 따른 최소 배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전문인력 최소 배치 기준에 따른 전문인력의 정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당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의 직제 및 정원에 관한 규칙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전문인력을 보유 면허 또는 자격과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건의료”란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보건의료기관 또는 보건의료인 등이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보건의료서비스”란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이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보건의료인”이란 보건의료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면허 등을 취득하거나 보건의료서비스에 종사하는 것이 허용된 자를 말한다.
4. “보건의료기관”이란 보건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보건의료서비스를 행하는 보건기관, 의료기관, 약국,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5. “공공보건의료기관”이란 국가·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가 설립·운영하는 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
6. “보건의료정보”란 보건의료와 관련한 지식 또는 부호·숫자·문자·음성·음향·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를 말한다.

김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제14조(설치)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와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라 보건소를 두고, 「지역보건법」 제13조에 따라 보건지소를 두며, 「지역보건법」 제14조에 따라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두며, 「농어촌 등 보건疫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라 의료취약 지역에 보건진료소를 둔다. <개정 2025.12.31.>

② 보건소에 보건행정과, 감염병관리과, 보건사업과, 북부보건센터를 둔다.

③ 제1항에 따른 보건소, 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 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보건소, 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 보건진료소의 명칭 및 위치, 관할구역(제14조 관련)

명 칭	위 치	관할구역
김포시 보건소	김포시 사우중로 108(사우동) ※ 북부보건센터 김포시 통진읍 마성로 77	김포시 일원
통진읍보건지소	김포시 통진읍 마성로 77	통진읍 일원
양촌읍보건지소	김포시 양촌읍 양곡로68번길 37	양촌읍 일원
대곶면보건지소	김포시 대곶면 읍생로 83-23	대곶면 일원
월곶면보건지소	김포시 월곶면 군하로 263	월곶면 일원
하성면보건지소	김포시 하성면 애기봉로 845	하성면 일원
고촌읍건강생활지원센터	김포시 고촌읍 장차로 14	고촌읍 일원
학운리보건진료소	김포시 양촌읍 첫섬로 11	양촌읍 학운리, 유현리, 대포리
대벽리보건진료소	김포시 대곶면 수남로22번길 7	대곶면 대벽리, 대능리, 약암2리
송마리보건진료소	김포시 대곶면 송마로 30	대곶면 송마리, 대명리, 석정리, 신안리, 쇠암리, 약암1리
성동리보건진료소	김포시 월곶면 문수산로252번길 42	월곶면 성동리, 보구곶리, 용강리
개곡리보건진료소	김포시 월곶면 애기봉로 455	월곶면 개곡·조강리, 통진읍 귀전리·고정리 하성면 가금2리~3리
마조리보건진료소	김포시 하성면 후평로 3	하성면 가금1리, 마조리, 시암리, 마근포리, 양택리, 후평리
석탄리보건진료소	김포시 하성면 석평로166번길 10	하성면 석탄리